

건설업계 주 52시간 시행 전 계약건 제외 건의

건설협, 제도 개선 재차 촉구

건설업계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해 7월 1일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 이전에 계약된 공사 현장은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15일부터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건의문을 통해 건설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한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완대책 마련이 지연되면서 건설업계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해 7월 1일 이전에 발주돼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은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사기간이 산정돼 공정계획이 잡혀 있는 만큼 이들 현장에 바뀐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건설협 도회 실장에 신동준씨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실장(일반직 2급)에 신동준(51·사진) 도회 부장이 임명됐다. 신동준 실장은 춘천 출신으로 강원고와 강원대 자원공학과를 졸업, 1995년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에 입사해 토목분야 특급 건설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 강원건설단체연합회 간사를 맡고 있다.



김도운

건협, 허승·박만일 등 회원이사 16명 보선 완료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16명의 회원이사 보선을 완료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회원이사 보선은 지난달 20일 열린 2019 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 의결에 따라 회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다.

회원이사는 △기본 규정 제·개정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및 결산안 △정부에 대한 중요 현안건의 △회원 복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에 보선된 회원이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허승(청광종합건설 대표) △박만일(서린건설 대표) △최종해(동양종합건설 대표) △김창환(상록건설 대표) △김영주(태호종합건설 대표) △한승구(계룡건설산업 대표) △김임식(남송종합건설 대표) △하용환(석진건설 대표) △오인철(태성종합건설 대표) △윤현우(삼양건설 대표) △정원웅(대웅건설 대표) △윤방섭(삼화건설사 대표) △공후식(동림종합건설 대표) △배인호(성호건설 대표) △김상수(한림건설 대표) △장태범(태웅종합건설 대표).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하면 상호협력평가 최대 10점 감점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에서 민간공사 현장의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사용실적 항목이 5점 배점으로 신설된다. 또 건설현장 사망사고 1명당 5점(최대 10점)의 감점 규정이 마련되고 협력업자와 동반 해외진출 때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상생협력 강화와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개정해 15일자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기준은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을 통해 사망사고 감축 등 건설현장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방점을 뒀다.

먼저 지난 4월 발표한 '추락사고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실적을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일체형 작업발판은 현장에서 강관을 엮어 만든 재래식 발판보다 추락 및 붕괴사고에 대한 안전성이 뛰어난 것으로 검증돼 공공공사에는 적용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의무화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민간공사 현장의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건설업자간 평가기준 개정 고시
 産災 감축, 안전관리 강화 초점
 민간공사 시스템비계 사용편
 최대 5점 가점 등 항목 신설

비율에 따라 5점의 배점을 부여한다. 80% 이상일 때 만점(5점)을 주고, 65~80% 미만 4점, 50~65% 미만 3점, 35~50% 미만 2점, 20~35% 미만 1점 등이다.

일체형 작업발판 배점 5점이 신설됨에 따라 협력업자 재무지원 항목 배점이 42점에서 37점으로 축소된다. 세부적으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5점) 항목이 삭제된다.

건설현장 사망자 수 평가 항목도 신설했다. 신인도 분야 감점 규정으로, 사고 사망자 수 1명당 5점씩, 최대 10점(2명 이상)을 감점하기로 했다.

기준은 이와 함께 협력업자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배점 항목과 가점 항목을 추가했다. 협력업자에게 신기술, 특허공법 등 선진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견학거나 기술 전수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

우 협력업자당 각 1점을 부여한다.

상생협력법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협력업자당 1점을 주기로 했다. 또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 해외 건설사업에 공동도급 등 동반 진출하면 최대 3점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도급심적 평가 때 지역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배점 기준을 강화했다.

평가대상을 모든 협력업자에서 지역 협력업자로 변경하고, 공동도급 총기성액 대비 지역업체의 공사실적 합산액 비율 기준을 종전 대비 5~10%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40% 이상일 때 만점(5점)을 주고, 30~40% 미만 4점, 20~30% 미만 3점, 15~20% 미만 2점을 각각 부여한다.

한편, 국토부는 고시를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지역 협력업자 공동도급 참여실적 평가 등은 내년부터 시행하고 일체형 작업발판 실적의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가 점으로 적용해 평가한다고 밝혔다.

봉승권기자 skbong@